

본회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재벌기업 양돈참여 움직임 강력 대처키로

- 홍 보 부 -

본회는 지난 2월 22일 양돈회관 대회의실에서 9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동용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91년도 사업계획과 12억 7백만 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승인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최근 정부와 재벌기업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벌기업의 양돈업 신규참여와 허가상한선 상향조정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전동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협회와 양돈업계가 모두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회고하고, 「금년에는 심기일전, 협회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양돈농가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수입 개방에 대비한 제도개선, 생산기술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박대관 감사와 노영한 전무이사로부터 90년도의 감사결과 및 사업실적을 보고받고, ▲ 90년도 수지결산(안) ▲ 91년도 회비 및 자조금 부과기준(안) ▲ 91년도 홍보자조금 부과기준(안) ▲ 9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결원중인 이사에 이광우 전영천지부장을, 감사에 이현운

부천지부장을 선출했다.

정기총회는 91년도 회비와 관련 90년도 12월 1일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400두 미만인 경우 회비 10,000원과 자조금 40,000원 등 50,000원을 기본부과하고, 사육두수 100두 초과시마다 자조금으로 10,000원씩을 더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육두수 399두 이하인 회원은 50,000원, 500~599두 사육회원은 70,000원, 5,000~5,099두 사육회원은 5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게 된다.

정기총회는 또 회원들의 돼지사육두수 1두당 50원의 홍보자조금을 부과키로 했는데, 100두 이하는 5,000원을 기본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0두 이하는 5,000원, 250두는 12,500원, 1,000두는 50,000원, 5,000두는 250,000원의 홍보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총회는 회비의 경우 5월 30일까지 지부에서 완납할 경우 완납금액의 10%를 지부운영 보조비로, 또 홍보자조금의 경우 8월 31일까지 완납할 경우 완납금액의 30%를 지부의 돈육소비 보조비로 교부해 주기로 했다.

정기총회는 91년도의 협회 사업목표를 ▲ UR 협상타결에 따른 양돈산업 정책제도, 구조, 경영개선 ▲ 협회조직 활성화를 통한 양돈인 권익보



호·증진 ▲ 돈육의 품질향상으로 소비확대에 두고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의원들은 금년도에 양돈진흥대회를 협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협회내에 정책개발연구위원회를 신설,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의원들은 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해 협회내에 사료분석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재벌기업의 양돈업 신규참여 허용 및 허가상한선 상향조정 검토 보도와 관련, 전양돈인들의 건의에 따라 개정된 축산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를 검토한다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에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정부의 돼지고기 수입 결정과 관련, 돼지고기 수입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히고, 세부적인 대책은 집행부에서 수립,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본회 전동용회장은 의안심의에 앞서 새로 선출된 지부장들에게 지부장 인준서를 수여하는 한편, 90년도에 협회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애쓴 충북도협의회(협의회장: 김철수)에 모범도협의회상을, 강화지부(지부장: 서승진), 아산지부(지부장: 김현병), 화순지부(지부장:

조영송), 영천지부(지부장: 이종택)에 모범지부상을, 예산지부 한양식 총무에 모범회원상을 상패와 함께 각각 수여했다.

또한 전동용회장은 90년도에 제1검정소에서 검정성적이 가장 뛰어난 태화축산(대표: 이시길)에 검정성적 최우수농장상을, 중원중축(대표: 이치한)과 일출중돈(대표: 손기호)에 우수농장상을 상패와 함께 수여했다.

다음은 본회의 90년도 주요사업실적과 91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계획이다.

• 90년도 협회 사업실적

'90년은 '89년의 양돈불황을 딛고 비교적 가 격은 안정을 유지하였으나 UR협상과 축산 분노 처리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인력난 가중, 수출 업체에 대한 육가공원료육 수입허용, 돼지고기 중금속 오염오보 등 제반문제 등으로 양돈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전회원 모두가 제반문제들에 의연하게 능동적으로 공동대처하므로써 슬기롭게 어려움을 이겨냈음은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90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법 시행규칙 확정

축산업 시행규칙중 개정령이 '90. 1. 19 확정 공포되므로서,

가. 등록규모는 모든 100두로 상향조정

나. 사유규모 허가상한선 모든 1,000두

다. 모든 1,000두 이상 사육업체는 초과사육 모돈을 '91. 3. 30까지 감축

2. 축산업 자조금제도 입법

가. 협회의 안대로 입법되지는 못하였으나

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법률 제4228호) 축산업 자조금제도가 입법되었다.

다. '91년도 시행규칙을 제정 '9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 축산업중 양돈업 소득 표준을 인하

'89년 양돈업의 장기불황에 따라 축산업중 양돈업에 한하여 '90년 소득표준율이 '89년도 7.2%에서 6.5%로 전년보다 9% 하향조정되어 절세하게 되었다.

4. 돈육통조림 산업피해 판정

소세지, 햄 등 값싼 돈육통조림의 과다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양돈산업에 큰 영향을 끼쳐 왔으므로 상공부 무역위원회에서 산업피해 판정을 받아내어 돼지고기 통조림 관세율이 현재 30%에서 50%로 상향조정이 되도록 하는 등 돈육통조림의 국내수입을 크게 막아냈다.

5. 육가공원료용 돼지고기 수입에 대해 능동적 대처

돼지값 상승에 따른 정부의 돼지고기 수입허용 방침에 대하여 본회는 수입허용방침 철회 요청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임시총회, 양돈산업현안비상대책(위)를 비롯 각도협의회·지부 및 회원들이 총단합에서 수입업체들에 대해 강력히 수입자제를 요청하여 수입철회를 하는 등 전회원들의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였다.

6. 제2검정소 신설, 사업개시

공인제2 종돈능력 검정소가 5. 10완공하여 정식 검정업무를 개시함으로써 경남·북, 전남·북, 충청지역 회원들에게 크게 기여하고 있다.

7. UR농산물 협상거부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농축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UR협상거부를 위해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서명운동, 세미나, 심포지움,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언론에 호소하고 주무기관에 농축산인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8. 돼지고기에 중금속 잔류물질 오보항의

돼지고기에서 중금속 물질이 허용기준치보다 상당초과되었다는 보도파문에 대하여 협회 및 전회원들의 강력한 항의 및 긴급대처로 이에 대한 당국의 해명과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키기 위하여 돼지고기 우수성 및 축산물 안전성에 대해 TV 및 매스콤을 통해 수차례 방영 홍보를 하였다.

9. 회원 직접 업무추진에 참여

협회, 임원, 지부장, 회원 등이 가 정당, 국회,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가격, 수입개방, UR협상, 대두박 관세인상, 가격안정대, 마사회이관, 분노처리 문제 등 양돈업계의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였다.

10.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관세 및 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91년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서명운동을 종결하고 영세율 적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1. 해외연수단 파견

6월 4일부터 9일간 미국 디모인에서 개최된 세계양돈박람회에 임원, 지부장, 직원이 참가하여 미국의 양돈산업 및 자조금 제도를 시찰하고 귀국하였다.

12. 대두박 관세율 인상 반대 건의

현행 3%인 대두박 관세율을 20~30%로 인상하여 줄것을 농림수산부가 재무부에 요청한 바. 이로 인한 배합사료 가격인상 요인이 1.8~2%나 되어 이를 철회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 '91년 3월까지 유보되도록 하였다.

13. 돼지 계통출하 정착

돼지출하 손실이 지난해부터 많은 문제(차상계류, 상인의 출하농간, 운송경비 과중)가 되어 왔으므로 본회가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돼지계통출하를 확대 실시하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역 회원들에게 원활한 출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왔다.

• 91년도 협회 사업목표

- UR협상 타결로 인한 수입개방에 따른 양돈산업의 정책제도, 구조, 경영개선
- 일차 단합된 협회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양돈인의 권익 보호증진
- 돈육의 품질향상(위생 및 상품화)으로 돈육소비(국내·외)확대추진

• 91년도 사업기본방침

1. 수입개방에 따른(UR타결 등) 양돈산업의 정책제도, 구조, 경영개선사업

- 가. 전업농 중심의 경쟁력 있는 경영형태 구조전환사업
- 나.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한 생산판매의 계열화 사업
- 다. 세제(관세, 부가세) 금융제도 개선사업
- 라. 양돈산업의 수출전략산업 육성, 정책개발사업
- 마. 협회 기구개편으로 효율적인 UR대응업무추진

2. 협회조직 활성화 및 지도사업

- 가. 지부 미 창설지역 지부설립 추진
- 나. 각 전문분과 위원회 적극적인 운영 및 활성화
- 다. 업무추진 효율화를 위한 지도, 교육, 회의, 관리 강화
- 라. 중앙회, 도협의회, 지부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
- 마. 국제교류 확대로 기술·경영 등 정보수집 강화 및 보급

3. 육질 개선을 위한 종돈개량 사업

- 가. 제1, 2 종돈능력 검정소 운영 활성화
- 나. 과학적인 종돈개량 촉진 도모
- 다. 한국형 종돈선발지수식 제정으로 종돈 개량촉진
- 라. 기초 양돈사육사 교육강화 및 인력 공급 확대

4. 돈육소비 홍보사업

- 가. 적극적인 돈육소비 홍보 강화로 산업의 안정적 발전도모
- 나. 돈육수요 개발 확대 및 돈육요리 홍보책자 발간
- 다. 돈육 품질향상(유해물질 잔류방지, 부위별 판매 홍보)을 위한 대내외 홍보강화
- 라. 소비자 단체와 연대사업 추진

5. 새로운 양돈기술 및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월간양돈과 주간양돈정보 확대 공급

- 가. 월간양돈 발행 사업
- 나. 주간양돈정보 발행 사업
- 다. 기타 전문 관계지 발간

6. 자조금 제도의 조기 정착 추진

- 수입개방 이전에 자조금제도를 정착시켜 양돈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확보